

학부모위원 선출공고

청완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청완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.

1. 입후보 등록

- 가. 자격 : 우리학교 및 병설유치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
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

● 제33조[결격사유]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나. 장 소 : 청완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(행정실)

다. 기 간 : 2018. 3. 8.(목) ~ 3. 12.(월)(근무시간내 08:30~16:30)(3일간)

라. 구비서류 : 입후보자 등록서 1통(사진1 매, 등록서 행정실 비치, 학교홈페이지 탑재)

2. 위원선거

가. 선거일시 : 2018.3.20.(화)

나. 선거장소 : 청완초등학교 토론문화실

다. 선거방법 : 학부모 총회에서 직접투표와 가정통신문 투표 병행

라. 학부모 위원 정수 : 초등학교 학부모 3명, 병설유치원 학부모 1명

마. 소견발표 : 선거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

바. 선거인 명부 열람 : 2018. 3. 16.(금) ~3.19.(월) (행정실)

사. 가정통신문 투표시 투표용지회수: 2018.3.16.(금)~3.19.(월)

3. 당선자 발표: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(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)

2018년 3월 6일

청완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(직인생략)